

의안번호	제 443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12월 일 (제 316 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연월일	2012년 12월 4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 443 호

제출연월일 : 2012년12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201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단위 : m², 천원)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충청북도교육청	건물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2,170	4,176,330
	건물	스마트에듀윌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	8,188	9,000,000
	건물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교사신축	2,520	10,050,000
청주교육지원청	건물	북대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932	2,008,450
	건물	주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1,556	2,472,000
충주교육지원청	건물	연수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1,232	2,260,315
제천교육지원청	건물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1,200	2,604,680
	건물	제천제일고등학교 본관교사 신축	3,384.14	4,838,384
보은교육지원청	건물	보은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1,419.8	3,176,773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건물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1,302	2,684,850
합계		(10건)	23,903.94	43,271,782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2.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취 득 처 분 시 기	취득(처분) 사유	취 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²)					
청주농업 고등학교	건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	2,170	4,176,330	2013. 하반기	취업거점형 농업계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충북 북부지역 모집학생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기숙사 신축	교육감	도면1
충청북도 교육청	건물	청주시 홍덕구 산남동 4-11 외	8,188	9,000,000	2014. 상반기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에듀워크센터 설치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	교육감	도면2
광혜원 고등학교	건물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 외	2,520	10,050,000	2014. 하반기	2015년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에 따른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	교육감	도면3
복대 중학교	건물	청주시 홍덕구 복대동 2608	932	2,008,450	2013.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교육감	도면4
주성 고등학교	건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7	1,556	2,472,000	2013.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교육감	도면5
연수 초등학교	건물	충주시 연수동 1232	1232	2,260,315	2013. 하반기	2014년 학급수 증가 대비 따른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교육감	도면6
용두 초등학교	건물	제천시 하소동 405	1,200	2,604,680	2013.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교육감	도면7
제천제일 고등학교	건물	제천시 동현동 15-3	3,384.14	4,838,384	2013. 하반기	노후된 본관교사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감	도면8
보은여자 고등학교	건물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 외	1,419.8	3,176,773	2013. 하반기	급식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교육감	도면9
증평여자 중학교	건물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8	1,302	2,684,850	2014. 상반기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교육감	도면10
합 계 (10건)			23,903.94	43,271,782				

①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 취득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
- 취득면적 : 2,170m² / 120명 수용
- 취득금액 : 4,176,330천원
- 사 유 : 취업거점형 농업계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충북 북부지역 모집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기숙사 신축

② 가칭)충청북도교육청 스마트에듀유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

- 취득위치 :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 취득면적 : 8,188m²
- 취득금액 : 9,000,000천원
- 사 유 :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에듀유크센터 설치 및 주차장 증축

③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

- 취득위치 :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 외
- 취득면적 : 2,520m²
- 취득금액 : 10,050,000천원
- 사 유 : 2015년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에 따른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

④ 복대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 취득위치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08
- 취득면적 : 932m²
- 취득금액 : 2,008,450천원
- 사 유 :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⑤ 주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 취득위치 :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7
- 취득면적 : 1,556m²
- 취득금액 : 2,472,000천원
- 사 유 :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⑥ 연수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 취득위치 : 충주시 연수동 1232
- 취득면적 : 1,232m²
- 취득금액 : 2,260,315천원
 - 급 식 소 (1층) : 1,013,315천원
 - 다목적교실(2층) : 1,247,000천원
- 사 유 : 2014년 학급수 증가 대비에 따른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⑦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 취득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05
- 취득면적 : 1,200m²
- 취득금액 : 2,604,680천원
- 사 유 :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⑧ 제천제일고등학교 본관교사 이전 신축

- 취득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15-4 외
- 취득면적 : 3,384.14m²
- 취득금액 : 4,838,384천원
- 예산현황
 - 2012. 본 예산 : 201,000천원
 - 2012. 제2회 추경 : 4,637,384천원
- 사 유 : 노후된 본관교사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⑨ 보은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 취득위치 :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 외
- 취득면적 : 1,419.8m²
- 취득금액 : 3,176,773천원
 - 급 식 소 (1층) : 1,257,095천원
 - 다목적교실(2층) : 1,919,678천원
- 사 유 : 급식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10 중평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 취득위치 : 중평군 중평읍 초중리 11-8
- 취득면적 : 1,302m²
- 취득금액 : 2,684,850천원
- 사 유 : 각종 교육활동 및 운동부 훈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목적교실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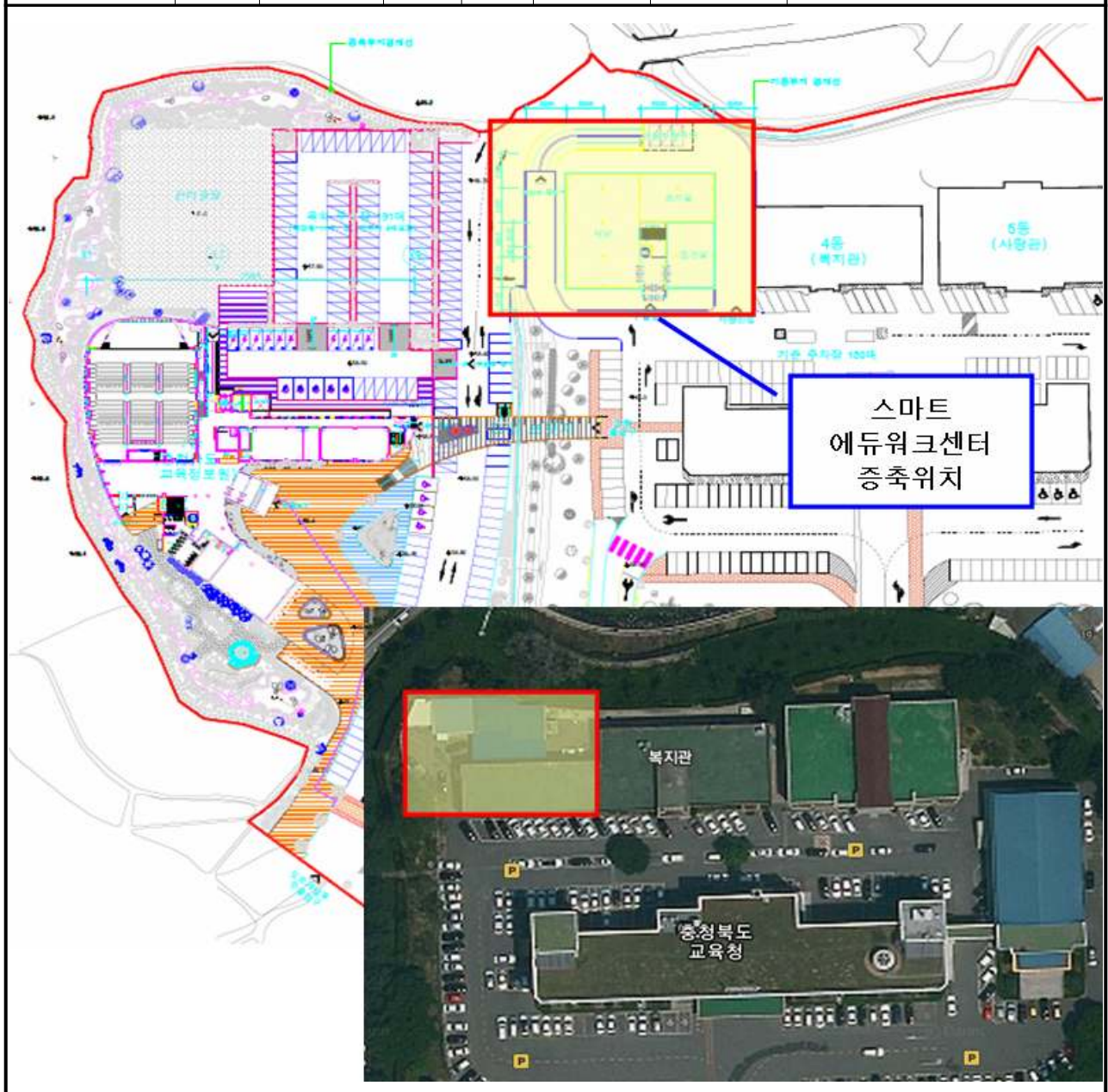
도면 1 :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위치도

건 명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청주농고 기 숙 사 신 축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	철근 콘크 리트	2,170	4,176,330	취업거점형 농업계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북부지역 모집 학생의 통학불편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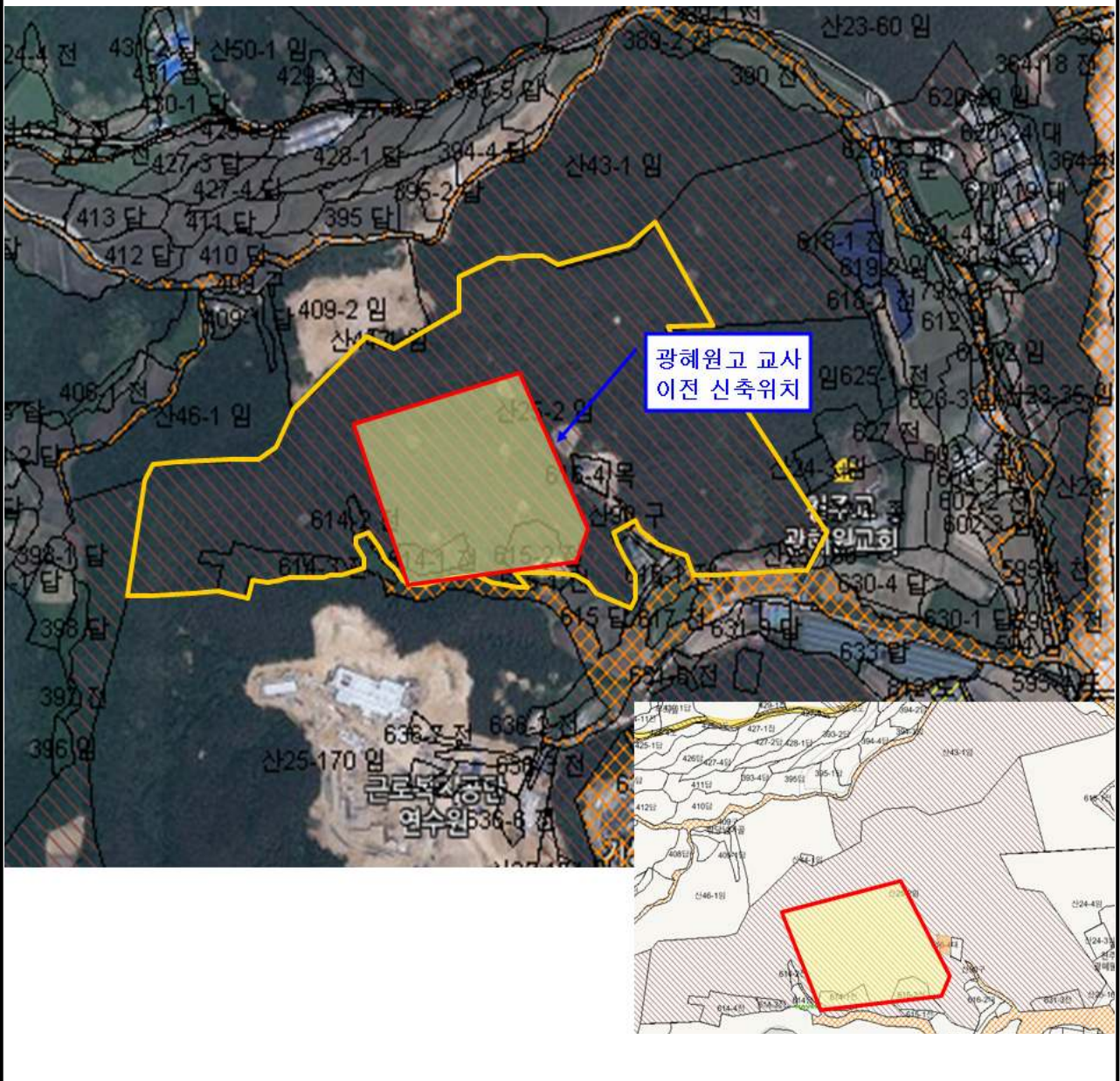
도면 2 : 스마트에듀유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스마트에듀유크센터 및 주차장 증축	건물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철근 콘크리트	8,188	9,000,000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에듀유크센터 설치 및 주차장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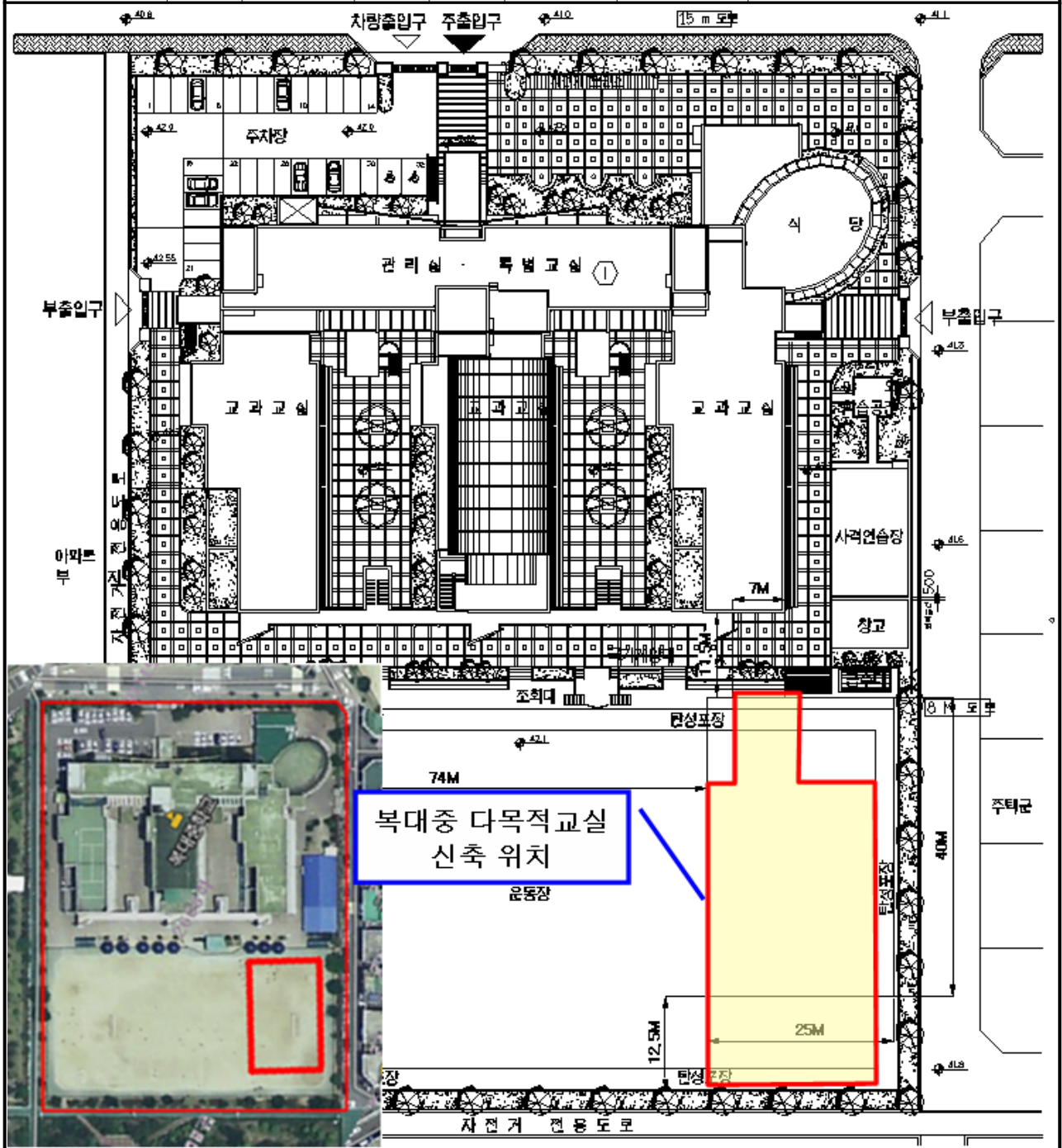
도면 3 :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광혜원고 교사 이전 신축	건물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	철근 콘크리트	2,520	10,050,000	2015년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에 따른 광혜원고 이전 교사 신축 - 2012. 2차 반영 : 1,050,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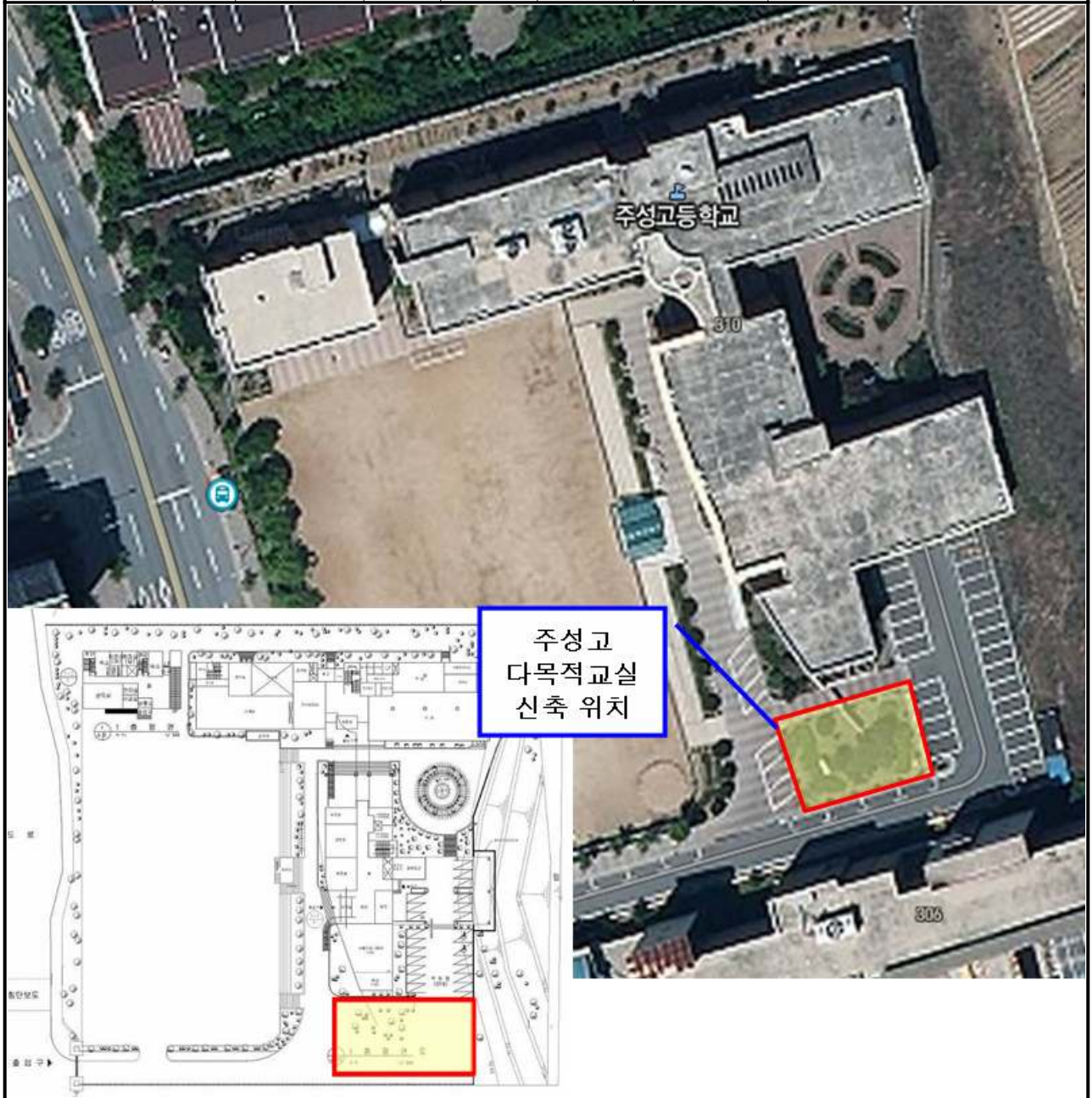
도면 4 : 복대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복 대 중 다목적교실 신 축	건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08	철근 콘크 리트	932	2,008,450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 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도면 5 : 주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주 성 고 다목적교실 신 축	건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7	철근 콘크 리트	1,556	2,472,000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 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도면 6 : 연수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연 수 초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 축	건물	충주시 연수동	1232	철근 콘크 리트	1,232	2,260,315	2014년 학급수 증가 대비에 따른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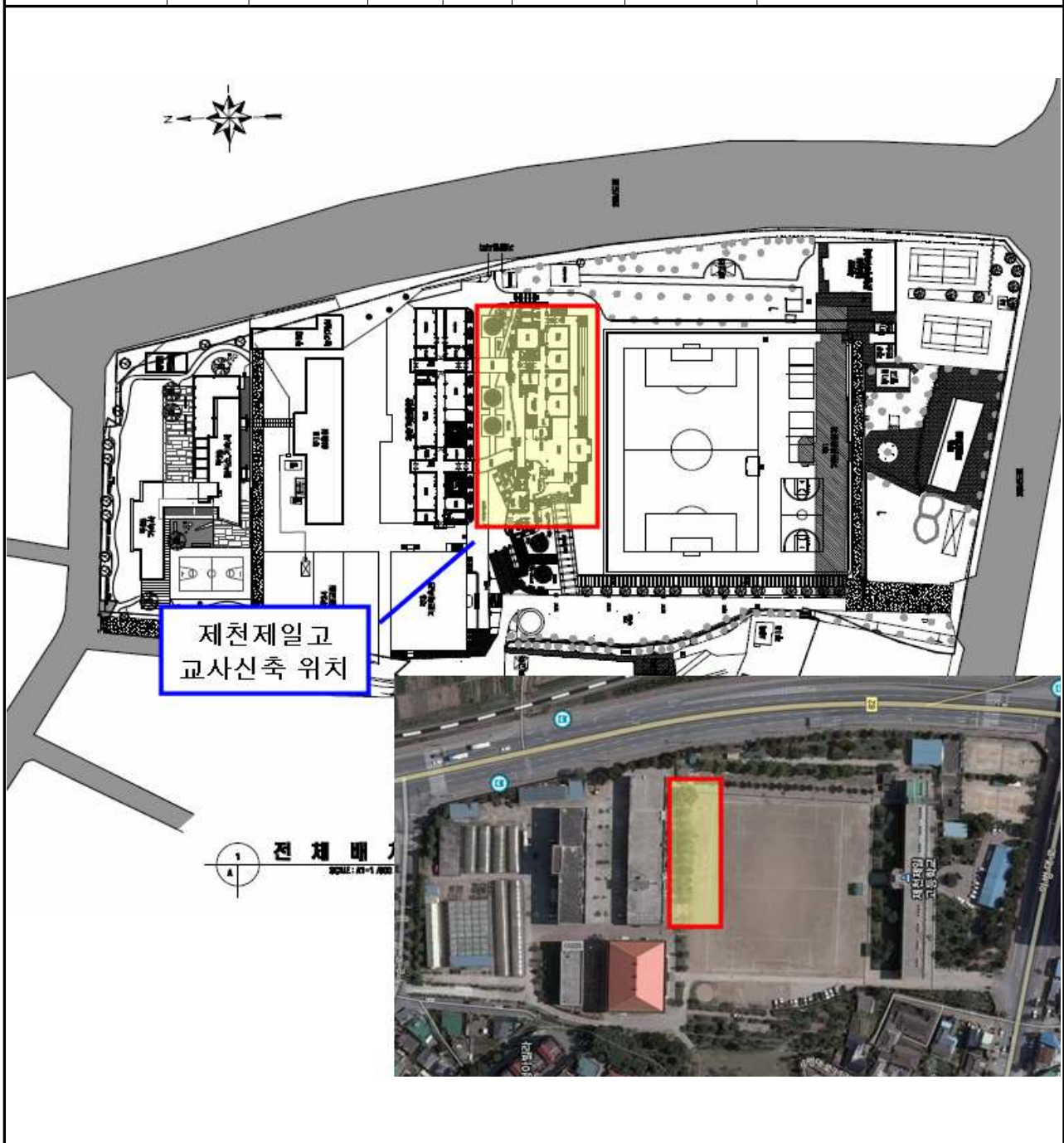
도면 7 :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용 두 초 다목적교실 신 축	건물	제천시 하소동	405	철근 콘크 리트	1,200	2,820,000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 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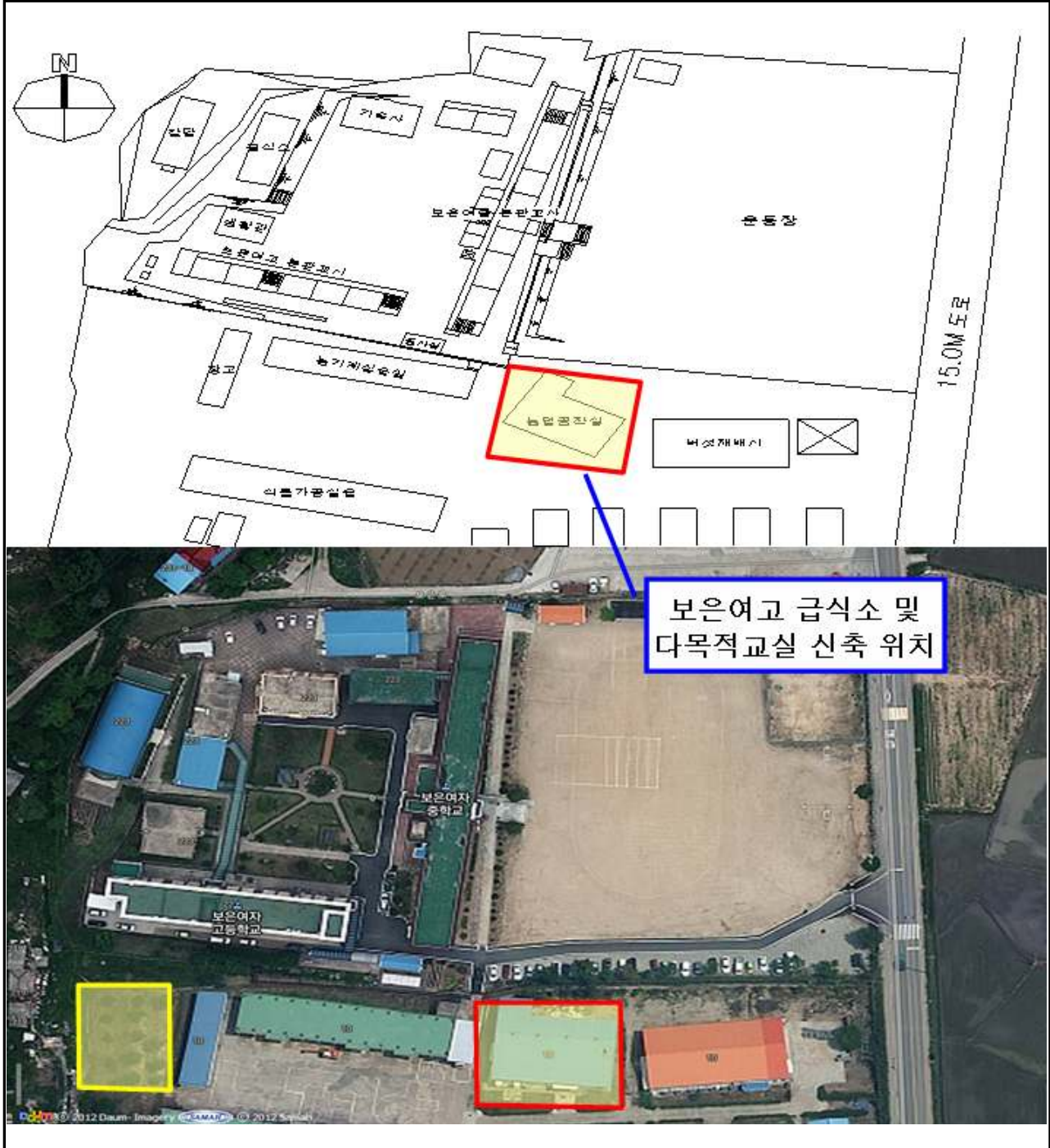
도면 8 : 제천제일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제천제일고 본관 교사 이전 신축	건물	제천시 동현동	15-3	철근 콘크리트	3,384.14	5,060,254	노후된 본관교사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도면 9 : 보은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보은여고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 축	건물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 외	철근 콘크 리트	1,419.8	3,176,773	급식환경개선 및 각종 교 육활동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도면 10 :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증 평 여 중 다목적교실 신 축	건물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8	철근 콘크 리트	1,302	2,684,850	각종 교육활동 및 운동부 훈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목적교실 신축



관계법령 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